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역항 소규모 위험물 반입·하역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의견조회

1. 관련

가. 「선박입출항법」 제32조(위험물의 반입) 및 제34조(위험물의 하역)

나.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항만운영과-7707, '23.11.27)

2. 현재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등에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위험물 반입 신고(→관리청) 및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관리청 승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위 관련 법령과 우리부 지침 및 항만 내 관행이 상이하고 관리청간 행정 집행기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현장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불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회 관리청, 유관기관 및 업계 대상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자유 서식)이 있으신 경우 '24.3.15(금)까지 우리 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4. 각 관리청에서는 소관 항만의 유관 사업자(소형 화물선 운항 사업자, 통선 업자, 용달선 업자, 해당 항만 기항 국제여객선사 등)에게 본 공문을 배포해주시기 바라며(홈페이지 게시 포함),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운조합·한중카페리협회에서도 소관 사업자(연안여객선사, 내항 화물선사 등) 대상 내용 전달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무역항 소규모 위험물 반입·하역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초안)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해양항만과장), 충청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경상남도지사(해양항만과장), 전라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운항만과장), 창원시장(항만물류정책과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사)한중카페리협회회장, 해양경찰청장(해양오염예방과장), 해양경찰청장(수사기획과장), 해양경찰청장(기동방제과장), 관세청장(관세국경감시과장), 인천광역시, 태안군수, 보령시장, 군산시, 부안군수, 영광군수, 신안군수, 진도군수, 완도군수, 여수시장, 통영시장, 거제시장, 울릉군수

주무관

김운석

행정사무관

김상현

과장

전결 2024. 3. 6.

최문건

협조자

시행 항만운영과-1485

(2024. 3. 6.)

접수

항만물류과-1274

(2024. 3. 7.)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74

팩스번호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대한민국 공개